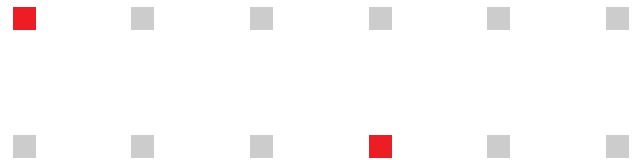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하여 FTA 파고 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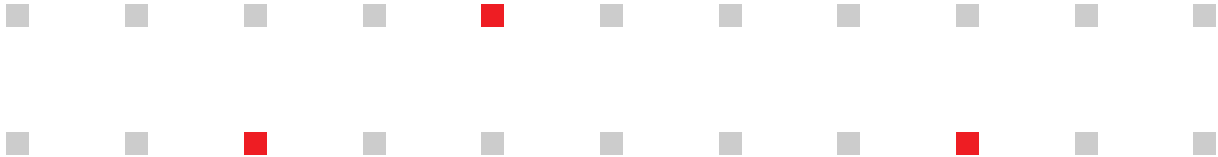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i@jd.re.kr

제1장 | 문제제기

제2장 |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제3장 | 무역조정지원제도 문제점 및 활용도 제고방안

제4장 | 기대효과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하여 FTA 파고 넘자

Contents

제1장 문제제기	4
제2장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5
2.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6
3.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시책	8
4.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	11
제3장 무역조정지원제도 문제점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외국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	12
2.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사례	14
3. 제도의 문제점 및 활용도 제고방안	15
제4장 기대효과	
1. 위기를 기회로 전환 가능	18
2. 적극적인 사례발굴 계기	18
3. 농업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제조업도 고려	18
4. 지원제도의 개선의 계기 마련	19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ssue Briefing



내용요약

- FTA는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며 FTA로 인한 구조조정 충격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도구임
- 그러나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의 부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 및 개인의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FTA시대의 전라북도 사회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 대두
-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의 경우에는 최근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인해 레드와인과의 경쟁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한편으로는 홍보효과가 되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 방안모색 필요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하는 제도
- 기업(무역조정기업)의 경우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융자, 경영 컨설팅, 출자, 정보제공 등을 지원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FTA체결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전직서비스, 훈련연장급여, 전직훈련 등 지원
- 각국은 FTA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저항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탄력적 운영과 적극적으로 활용으로 충격을 최소화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컨설팅지원은 FTA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향후 체결되는 FTA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지원책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용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FTA지원센터,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각 기업들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전략적 대응 필요

제 1 장 문제 제기

-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한 무역 자유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들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FTA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필연적이고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증폭시킬 것이므로 소득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FTA에 대한 손익을 분석해야 함
 - 과세제도나 경제흐름이 투명한 국가에서는 왜곡된 소득배분을 재분배 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성을 가지나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소득배분을 재분배가 어려워 FTA의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은 클 수밖에 없음
- FTA는 경제적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며 FTA로 인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가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도구임
- 그러나 이 제도는 제도적인 한계와 홍보부족으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제284차 무역위원회에서 (주)너트클럽,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 등 2개 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대하여 무역피해가 있다고 심의·의결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켰음
-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 및 개인의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FTA시대의 전라북도 사회안전장치를 확보를 할 필요성 대두
 -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의 경우에는 레드와인과의 경쟁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 방안모색 필요
 - 특히 미국, EU, 그리고 중국과의 FTA는 규모 뿐 아니라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민감품목이 많아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제 2 장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 FTA 지원대책 필요

- 2000년 대 들어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경제통합이 급증하면서 전략적으로 FTA 추진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도모
-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 GDP상승, 제도의 선진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FDI확대, 기술협력 촉진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단기간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업종 피해가 발생하며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최소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FTA 추진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기반 마련
-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농수산업뿐 아니라 영세 제조업 및 서비스 분

야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대부분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세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도 지원강화 필요
- 특히 향후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업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제도의 개요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하는 제도
-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농수산업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함

〈표 1〉 FTA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

농업	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① 직접피해보전대책 -피해보전직불금 *시설포도, 키위→모든품목 -폐업지원금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모든품목 ② 경쟁력강화대책 -구조개선 *전업농중심의경영규모화촉진 -품목별경쟁력강화 -신성장산업육성 *농식품산업, 종자산업등 ③ 노후생활안정대책 ④ 농촌활성화대책 *농촌관광수요확대, 도시민의 농촌투 자촉진등	① 직접피해보전대책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② 경쟁력강화대책 -구조개선 *어선감축등수산업구조조정 -분야별경쟁력강화 -신성장산업육성 *수산가공·유통산업육성, 내수면 양 식품종개발·육성 등 ③ 어촌소득기반확충대책 *수산자원보호구역내숙박시설 규모제한완화등	① 직간접피해구제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기업으로지정하여 컨설팅, 융자자금등지원 -사업전환지원제도 *융자지원, 법인세감면, 공장 설립절차 대행지원등 ② 경쟁력강화대책 *제약산업, 서비스산업등

2.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1) 제도개요

●● 제도의 목적

-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투자, 정보제공 등 시책지원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을 제고시킴
- 무역피해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시책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

●● 지원대상

- 기업(무역조정기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피해의 주된 원인이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주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피해회복 및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
 - 무역조정지원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FTA체결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지원대상 업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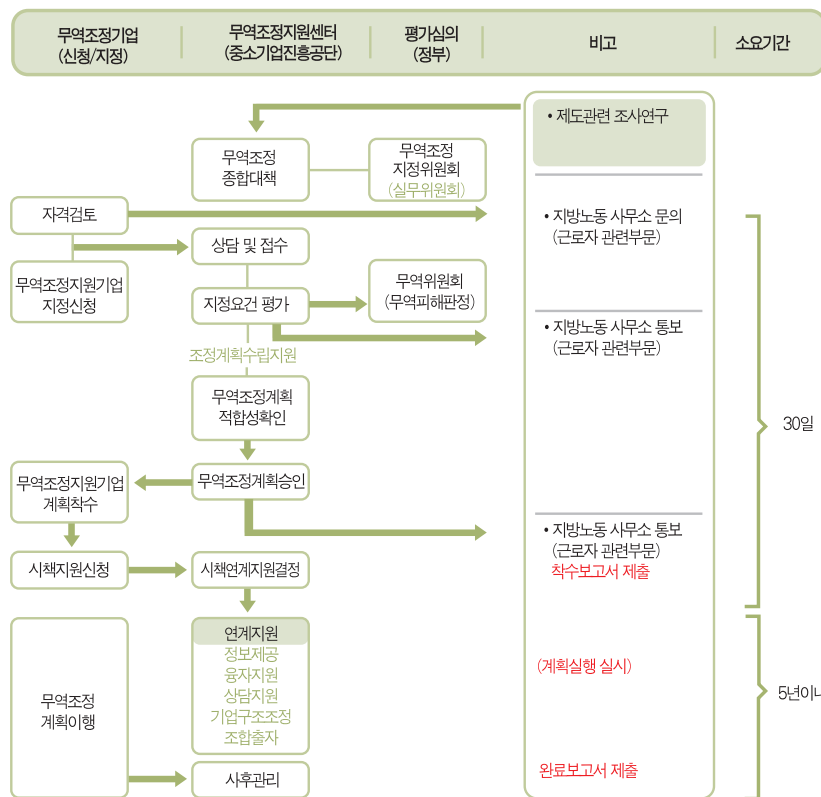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¹⁾

-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²⁾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
- 기업이 지식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①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중진공에서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지경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

2) 지정절차

- ● 신청요건 및 절차
-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 요건

〈그림 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절차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자세한 업종은 부록 참조
- 2)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

- 무역조정기업 신청
 - 제출서류 :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 1부 (무역피해사실입증서 1부, 무역조정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것에 한함))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위원회
 - 무역위가 심각한 피해여부 및 동 피해가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무역피해기업으로 판정
-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평가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분석 등 진단은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수행하고, 평가위는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확보에 적합한지를 평가·심의
- 산자부는 무역위원회 및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에 무역조정기업 지정여부 통보

〈표 2〉 심각한 피해의 기준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상동(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율, 제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taa.go.kr/sub_05_05.html

- 지정제외대상
 - 무역조정지정이 안 된 경우
 - 부지정일 또는 무역조정기업이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지원
- 지원대상: 법 제6조(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등)에 의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3.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시책

1) 융자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단기 경영안정 및

- 지원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외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 (용자에정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신청 당해연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용자 대상으로 포함)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용자지원범위

- 시설자금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용자지원조건

- 용자금리 : 연 4.07%(2009년 4/4분기 기준 금리)
- 분기별 적용 기준금리는 포탈사이트 (www.taa.go.kr) 공지사항에 공지
- 용자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며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임.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2) 경영/기술 상담지원

●●지원근거

- 법 제 9조(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회계, 법률, 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수행
- 지원대상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 중 상담지원을 신청한 업체
- 상담 분야 및 지원조건

〈표 3〉 심각한 피해의 기준

상담지원분야	소요비용(계약)	지원한도(비율)
무역조정전략	30	24(80%)
부분별 경영 기술개선	20	16(80%)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taa.go.kr/sub_05_05.html

- 무역조정전략은 3천만원을 초기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까지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분별 경영, 기술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초기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까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상담지원분야별 세부 내역

〈표 4〉 상담지원분야 세부 내역

상담지원분야	소요비용(계약)	지원한도(비율)
무역조정전략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제품(서비스), 조직, 마케팅 등에 대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회복)를 위한 무역조정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마케팅, 생산, 조직, 회계, R&D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전환, 사업구조개편, 조직·인력구조 개편, 재무구조조정 등 무역조정 전략을 수립하거나, 차별화전략, 전산화추진전략, BPR, 고객관리시스템 등 혁신·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필요시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부분별 경영 기술개선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및 기술(생산)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특정 분야(요소)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개선방안 도출	재무, 마케팅, 조직, 원가관리, 고객서비스전략, 계약관리, 고객정보시스템 등 경영관리 분야와 생산관리, QC, R&D, 신제품개발, 인증, 물류 IT화, TPM 등 특정기술 분야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taa.go.kr/sub_05_05.html

3) 출자지원

●● 지원근거

- 법 제 10조(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에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규정에 의하여 중진공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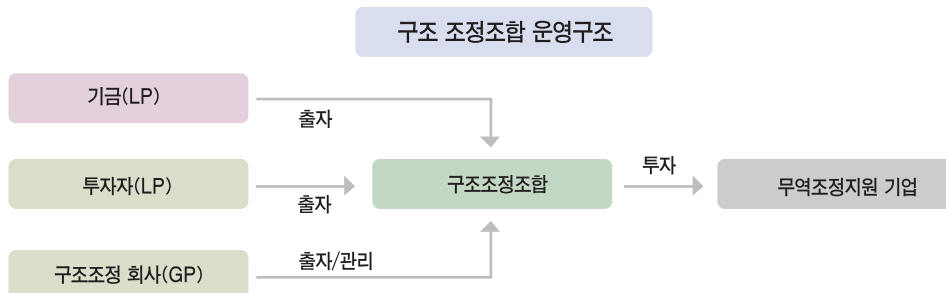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

●● 지원내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합출자금의 50%이내에서 출자지원

●● 지원 체계

〈그림 2〉 구조 조정조합 운영구조



GP(GENERAL PARTNER) : 업무집행 조합원(창투사 등)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LP(LIMITED PARTNER) : 일반 투자자로서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taa.go.kr/sub_05_05.html



4) 정보제공

- 지원근거
 - 법 제 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 무역조정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을 통하여 무역피해 및 지원대상 여부 등 자체 평가·진단
- 무역조정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및 상담대응
 -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 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 FTA 체결 및 무역피해 관련 연구자료, 조사 통계자료, 국내외 사례 등

4.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시책

1) 지원개요

- 지원 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사회 안전망이 비교적 잘 짜여져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FTA 피해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전직에 필요한 질 높은 서비스와 전직기간 동안 생활안정 보장

●● 지원 요건

-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 (지정요건)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매출액의 20%이상),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 이전기업 등에 소속된 실직근로자 또는 근로시간단축근로자
- 동종상품의 수입증가로 6월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으로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한 기업
- 2개월 평균근로시간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하여 30/100이상 감소한 자

2) 전직지원 서비스의 강화

-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것으로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
- 무역조정기업이 고용조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지원장려금을 100% 지원(기존 2/3~3/4 지원)
- 폐업·도산한 기업의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전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 노사공동재취업센터(노총·경총 공동운영, 국비지원)의 지원인원 및 센터수의 확대

3) 훈련연장급여 지급

- FTA 피해근로자의 전직(훈련) 기간중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기간(90~240일) 종료 이후에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
- 실업급여기간 종료 이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종전 70%)를 최대 2년간 지원
-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선정·지원(종전 지방노동관서장 재량 지정)

4) 전직훈련 강화

- 무역조정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훈련과정 확대 및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조정근로자 대상 단기·수시 적합 훈련과정을 개설하되, 훈련과정의 유연성을 위해 훈련과정공모제 실시
- 특히 재직자 훈련의 경우, 공모로 선정된 훈련전문기관이 30시간 내외의 단기 과정을 개설(사업주에게 소속근로자 훈련참여시 인건비 일부 보전)

5) FTA 신속지원팀 설치

- FTA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FTA 신속지원팀』설치
-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한 후 점차 확대

제 3 장

무역조정지원제도 문제점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외국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

- OECD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경제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 각국은 다양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피해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피해산업의 지원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음

- 이와 같이 각국은 FTA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저항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 미국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TAA)는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프로그램으로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인정하는 대신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 확보 차원에서 마련됨

- 1962년 무역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02년 8월 재정립됨
- 미국 의회는 1994년 종료되었던 무역촉진권한을 재통과 시키면서 1993년 도입되어 운영되었던 NAFTA-TAA와 통합한 새로운 무역지원제도 정립함
-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가 서명됨으로써 TAA적용대상 및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됨

〈표 5〉 미국 TAA 운용현황

	기업 TAA	근로자 TAA	농어민 TAA
시행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2002년, 2009년 개정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2002년, 2009년 개정	2002년 무역확대법개정
목적	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고용,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	무역자유화로 수입증가와 생산기기 이전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지원
담당기관	상무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노동부 교육훈련청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농림부 외국농산물서비스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농어민
지원형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부담	직업훈련, 소득지원, 구직 및 전직비용, 이사비용,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운영성과	기술지원: 기술경쟁력 상승	소득지원: 성과 불분명	2003년부터 실시

자료: 류재원, 임혜준(2005),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KIEP

- EU의 세계화조정기금 (EGAF)
 -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해주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유럽의 경제통합과정

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Funds, ESF)을 창

설하고 운영함

- ESF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자유화의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님
-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취약 산업분야나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유럽세계화조정 기금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EAGF)을 창설함
- 2006년 12월 승인되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무역자유화로 실업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
- 적극적 노동시장을 통한 직접지원 방식(카운슬링, 구직지원, ICT기술, 트레이닝, 기업가훈련 등)

●●기타 국가들의 제도

-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산업활력재생법」을 통해 지원
 - 사업재구축·공동사업개편 등을 추진할 경우 세제, 상법,금융 지원 등 제공
- 멕시코의 경우에는 3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 및 제조업의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농민소득직불제(PROCAMPO)와 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 운영
- 그 외 기타 국가들의 지원책
 - 캐나다(섬유산업), 체코(제조업), 칠레(제조업), 폴란드(에너지·철강산업) 등이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취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2.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사례

- 현재까지 TAA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5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해당되는 사례는 최근의 (주)너트클럽과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에 대해 FTA에 대한 피해를 인정 한 것에 불과함

●●(주)너트클럽 사례

- 무역위원회에서 (주)너트클럽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발효한 한-ASEAN FTA 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하여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함
- 의류제품의 기본관세는 13%였으나 FTA발효로 8%가 되었고 세부 품목별로 '08년부터 무관세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
 - 발효시 8%→'08년 5%→'09년 3%→'10년 0%됨
- 이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업체가 제시한 피해기간('08.10~'09.3) 중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65.8%, 물량은 107.4% 증가함
- 베트남산 제품 수입
 - ('07.10~'08.3) 13,048천불, 527,132kg → ('08.10~'09.3) 21,639천불, 1,093,207kg
- 국내 골프웨어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너트클럽은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됨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 사례

-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북



분자주 업체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로서 복분자주와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넓게 인정
 -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복분자주와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한-EU와의 FTA에 대해서도 활용할 방안이 생김
 -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칠레산 레드와인이 전체 레드와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고, 업체가 제시한 피해기간인 '10.1~6월 중 레드와인 수입도 10.5% 늘어남
 - 관세(%): ('04) 12.5 → ('05) 10 → ('06) 7.5 → ('07) 5 → ('08) 2.5 → ('09) 0
 - 칠레산 비중(%): ('04) 15.2 → ('05) 19.8 → ('06) 19.9 → ('07) 23.1 → ('08) 29.9 → ('09) 31.7
 - 복분자주 대비 칠레산 레드와인의 평균가격도 피해기간 중 4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동 기업은 주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매출·생산 등이 25% 이상 감소하였음
- 신청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자금 및 융자자금을 지원받게 됨
 - 앞으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 FTA 기준이 현실화 될 것이므로 본 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의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3. 제도의 문제점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문제점

- 낮은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도
 - 무역조정지원제도 이후 현재까지 TAA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5개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이러한 결과는 먼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FTA로 인한 피해가 적어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피해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피해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임
- 비현실적인 TAA규정
 - TAA 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 혹은 생산액의 25% 감소 규정이 기업 현실에 비취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신청하기 어려움
 - TAA법에 대한 제2차 개정에서 25% 매출감소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동일기준 적용됨
 - 그동안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지원범위와 기준을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AA 활용도가 낮고 기업의 관심도 적은 편임

● 포괄적인 TAA업종 대상

- FTA와 무관하게 무역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은 TAA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외국인 수입품이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무역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TAA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품이 50% 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품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TAA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2) 활용도 제고 방안

- 중국,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이행되기 이전에 TAA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야만 할 필요성 있음
- 또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자체 차원의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적극적 홍보

-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의 활용도 제고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이 가장 FTA로 인하여 취약하나 이들의 정보습득은 늦게 되므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야 함
- 지자체단체의 제조업 분야의 홍보 역할 강화
 - 지금까지의 FTA는 농업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며 제조업 분야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FTA는 실질적으로 규모면에서 향후 있을 FTA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므로 미래의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홍보시스템의 구축 필요하며 지역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

●● 제조업 분야 지원인프라 강화를 통한 적극적 사례발굴

-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신속·용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TAA 정책의 요체임
 -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체제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지역별로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을 주축으로 한 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TA지원단 구축하여 FTA로 인한 구조조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
 - 고용지원출장센터를 주요 공단지역에 설치·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수행
- 지원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현재 기업들에 대한 사업적, 재정적인 검토를 통해 사례의 적극 발굴
 - 현재 기업들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현재 뿐 아니라 향후 피해가 확실한 분야 및 기업에 대한 발굴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비



- 지원기준의 조정
 - 지원기준을 매출액 10~15% 감소로 낮추고, 기준완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 1962년 TAA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도 초기에는 매우 엄격한 지정요건 하에 TAA를 운영했으나 12년 후인 1974년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현재는 무역조정기업 지정요건을 '매출액(또는 생산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함³⁾
- 탄력적인 제도 운영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되 TAA 지원기준을 완화시켜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
 - 매출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 감소율이 지원기준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무역피해가 확실하면 TAA를 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무역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록 현재의 매출액 감소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TA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함
-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무역조정지원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구조조정 컨설팅 제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규정으로 되어있는 소요비용의 80%까지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은 구조조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원 한도를 높이고 동시에 수혜기업의 부담비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3) '5%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매출감소 요건을 과도하게 높여 적용할 경우 도산이 임박한 기업에 대한 정책개입의 타당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제 4 장 기대효과

1. 위기를 기회로 전환 가능

- FTA로 인한 시장개방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및 업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며 이러한 부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로서 최근의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은 복분자주와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FTA로 인한 복분자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향후 미국, EU와의 FTA를 앞두고 있는 복분자 산업의 경우 프랑스산, 미국산 포도주와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강화와 체질개선을 통해 틈새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컨설팅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향후 체결되는 FTA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지원책 역할을

할 수 있음

2. 적극적인 사례발굴 계기

- 피해규정 적용상의 문제로 FTA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은 것과 기업들의 정보부족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원조건의 완화, 도덕적해이 방지대책의 마련과 더불어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와 FTA지원센터,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현재, 기업들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전략적 대응 필요

3. 농업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제조업도 고려

- 현재까지의 FTA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부분 농수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연차

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의 FTA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므로 “피해가 유력한”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효를 위한 근거마련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매출액 감소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TA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며 대신 기업의 부담비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적 운영 필요

4. 지원제도의 개선의 계기 마련

-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현재 25%로 되어있는 지원기준을 10~15%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무역피해가 우려가 확실히 되는 경우 현재의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09, 자유무역협정과 우리정부의 노력
- 김수동, 2010, 미국과 EU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무역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taa.go.kr/sub_05_05.html
- 임혜준 외., 20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 지원제도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 FTA와 중소기업 지원

〈표 5〉 미국 TAA 운용현황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광업	B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건설업	F	스포츠 서비스업	911
전기업	351	수상 오락 서비스업	9123
수도사업	360	갠블링 및 베틀업	9124
철도·항공운송업	491/5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우편업	6110	협회 및 단체	94
중앙은행	6411	가구내 고용 활동	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달리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98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851/352/353	가구의재화 및 서비스 활동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국제 및 외국기관	99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참고: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함

JDI  Issue Briefing

